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람	의장

제1734호 2023. 3. 2.(목)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85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99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485호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3.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2. 개정이유

- 서구립예술단 현실적 수용가능 인원으로 정원 조정

### 3. 주요내용

- 예술단별 정원(별표1)을 개정하여 예술단별 정원을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조정
  - 합창단 단위 : 60명 → 50명
  - 소년소녀합창단 단위: 70명 → 60명
  - 풍물단 단위 : 60명 → 50명

####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 2023년 3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 서면이나 전화(팩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 주 소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13층 문화관광체육과  
(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 ○ 연락처

☎ 032) 560-3132 / FAX 032) 560-2748

####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각 1부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현실적으로 단원 수용 가능 인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예술단별 정원(별표1)을 개정하여 예술단별 정원을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조정.
  - 합창단 단원: 60명 → 50명
  -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70명 → 60명
  - 풍물단 단원: 60명 → 50명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술단체별 정원(제3조와 관련)

예술단체명	정 원	비 고
합 창 단	예 술 감 독 1명 반 주 자 1명 단 무 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 원 <u>50명</u>	
소년소녀합창단	예 술 감 독 1명 반 주 자 1명 단 무 장 1명 성악지도자 1명 단 원 <u>60명</u>	
풍 물 단	예 술 감 독 1명 훈 련 장 1명 단 무 장 1명 단 원 <u>50명</u>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49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7.11.)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 사항(안 제5조)
- 지원 신청(안 제6조)
- 지원 방법(안 제7조)
- 지원 결정(안 제8조)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민원봉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253, 팩스 560-285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마. 지원 사항(안 제5조)
- 바. 지원 신청(안 제6조)
- 사. 지원 방법(안 제7조)
- 아. 지원 결정(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 2. 의료비

3.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예산의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휴식시간	제5조제1항제3호	2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제5조제1항제4호	상담 연계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2. ~ 8. 생략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 ④ 생략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 ④ 생략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